[양식 제10호] [様式第10号]

혼	인	신	고	}							
婚姻届											
(년	월	일)								
(年	月	日)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に沿って記載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u> </u>	편(부)	아 내(처)				
	区分	}			夫				妻		
① 후 인 당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 ル	*(対) *(氏)	/ (语 / (名		(인) 또는 서명 - (印)又は署名-	*(対) *(氏)	/ (명 / (名))	(인)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17)人13471	(성) (氏)	/ (명) / (名)		(四)人体有相	
사 자 (신	- モ(ゼベア) - 本貫(漢字)			전호 電記			본(한자) 本貫 (漢字)		전화 電話		
교인) ①		연월일 F月日									
婚姻当		등록번호 登録番号			- -				- -		
事者個	* * 등록기준지 * * 登録基準地										
出人)		주소 住所									
(a)		 성명 D氏名									
② 부 모		등록번호 登録番号			-				-		
ㅗ (양 부모)		기준지 基準地									
② 父		성명 D氏名									
母 (養		등록번호 登録番号			-				-		
父母)		기준지 基準地									
		에 의한 による婚				년 年	월 月		일 日		
	<u> </u>				_ 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아니요□	
		の協議				性・本貫とする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⑤近親婚の有無				婚姻当事者が8親等以内の血族に該当しますが。 はい□いいえ□						
⑥기타사항										
⑥その他の事項										
	성 명		경	(인) 또는 서	명 주	주민등록번호			-	
		氏名	, 1	(印)又は署	名自	民登録	番号	-		
		주 4	Č							
⑦증인		住所	Í							
⑦証人		성 더	경	(인) 또는 서	명 주	-민등록	번호		-	
	氏名			(印)又は署	名自	E民登録	番号 -			
	주 소									
		住所	Ť							
	남 편	부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父	氏名	(印)又は署名	후	氏名			(印)又は署名	
⑧동의	夫	모	성명	(인) 또는 서명	견	주민등	·록번호		-	
자		母			인	住民登	録番号		-	
⑧同意	아	부	성명	(인) 또는 서명	後	성명			(인) 또는 서명	
者	내	父	氏名	(印)又は署名	見	氏名			(印)又は署名	
	妻	모	성명	(인) 또는 서명	人	주민등	·록번호		-	
	女	母	氏名	(印)又は署名		住民登	録番号		-	
⑨신고인 출석여부		부	① 남편(·	부)	⁻) ② 아내(처)					
9届出力	(出)	席有			夫		2妻			
⑩제출인	<u>.</u>]		성명			주민등록	-번호		-	
⑩提出人 氏名			氏名	1	1	主民登録	番号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下記の事項は 「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よって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添付書類及び婚姻当事者の国籍と婚姻の種類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门	句調査							
⑦ 실제 결·	혼 생활	할 시작일				년	월	일부	터 동거	
② 実際の結婚生活開始日						年	月	日か	ら同居	
⊕ 혼인종	Ð 혼인종									
류	남편	[]초혼 [길사별 후 재	후 재혼	아내	[]초혼	2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⑤ 婚姻種	夫	11初婚 [2	2死別後再婚	婚	妻	①初婚 ②死別後再婚 ③離婚後再婚				
類										
마 최종 졸	남편	①학력 G	없음 ②초등	등학교 ③	중학교	아내	[]학력	없음	2초등학교	③중학교
업학교	(부)	①学歴な	し 2小学	经校 3	中学校	(처)	1]学歴な	e L	②小学校	③中学校

ⓒ 最終学	夫	[4] 고등학교 [5]	대학(교)	6대학원 이상	妻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	학원 이	l상
歴	大	4高等学校5	大学(校)	6大学院以上	安	4高等学校	5大学(校)	6大学院以上		上
		①관리직	2 전문	-직		[]관리직	2전	문직		
		1管理職	②専門]職	ها ، اا	1管理職	選事門職			
		③사무직	4 서비	스직		3사무직	4서비스직			
		③事務職	4サー	・ビス職		③事務職	4サ	ービス職	į	
	남편 (부) 夫	5판매직	6 농림	어업		5판매직	6 농	림어업		
		5販売職	6農林	漁業		5販売職	6農	林漁業		
ൿ 직업		7기능직	8 みえ	l·기계 조작 및	아내	7기능직	8장	치기계	조작	및
d 職業		7技能職	조립		(처) 妻	7技能職	조립			
			8装置	・ 機械操作及び	安		8装	置・機械	找操作 》	及び
			組立				組立			
		9단순노무직	10군인]		9단순노무직	10 ਹ	인		
		9単純労務職	10軍人			9単純労務職	10軍	人		
		Ⅲ학생·가사·무직				[1]학생·가사·무	'직			
		111学生・家事・無	採職			111学生・家事	• 無職			

작성 방법

作成方法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①、②欄及び⑤、⑦欄は全ての届出人が記載し、その他の欄(③、④、⑥、⑧)は該当する人のみ記載します。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住民登録転入届は家族関係登録届とは別に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欄: 婚姻当事者が養子である場合、養父母の人的事項を記載します。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③欄: 外国方式による婚姻証書謄本の提出の場合には婚姻成立日を記載します。

④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④欄: 「民法」第781条第1項の但書により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がある場合にはそのような事実を表示します。

⑤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⑤欄: 婚姻当事者らが「民法」第809条第1項による近親婚に該当しないという事実[8親等以内の血族(特別養子の養子 縁組前の血族を含む)]を表示します。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 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による婚姻届出(両当事者が生存している場合に訴訟提起者のみ届出可能)の場合 は裁判法院及び確定日付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父母の婚姻によって婚姻中の子の身分を取得した子がいる場合は、その子の氏名、登録基準地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⑦欄: 証人は成人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⑧欄: 未成年者又は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婚姻する場合には同意内容を記載します。
-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⑩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 ⑦라: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②欄: 結婚日付と関係なく実際夫婦が結婚(同居)生活を始めた日を記入します。
- 따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 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すべ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例示>大学3年生在学(中退)→ ④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 @라: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欄: 結婚する当時の主な職業を基準に記載します。
- ① 管理者: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部署の政策と活動を企画、指揮及び調整(公共及び企業の管理職など)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 (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② 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専門知識を活用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など)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③ 事務従事者: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する業務(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など)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④ サービス従事者:公共安全、身辺保護、ケア、医療補助、美容、婚礼及び葬儀、運送、余暇、調理に関する業務
-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 (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⑤ 販売従事者:営業活動による商品又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店、公共場所など)、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など
- ⑥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⑥ 農林・漁業熟練従事者:作物の栽培・収獲、動物の繁殖・飼育、森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など
- 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가공
- 7 技能員及び関連技能従事者:鉱業、製造業、建設業で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行う機械の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 图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图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従事者:機械操作による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備の操作、運送装備の運転など
-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1. 婚姻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各1通
-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 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2. 婚姻同意書[未成年者又は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婚姻する場合、但し、届出書の同意欄に記載して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例外]及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被成年後見人の婚姻に成年後見人が同意する場合のみ)
-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 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3.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出す場合、その裁判書の謄本と確定証明書各1部[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停(和解)調書及び送達証明書各1部]

-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4. 婚姻届出特例法による婚姻の場合、審判書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1部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5. 事件本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韓国方式による婚姻である場合:外国人の婚姻成立要件に適合する証明書(中国人である場合には未婚証明書)の原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各1部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부
 - 外国方式による婚姻である場合:婚姻証書1部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1部
-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 6. 「民法」第781条第1項の但書により、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をした場合には協議事実を証明する 婚姻当事者の協議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414号別紙1様式)1部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① 一般的な婚姻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全て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 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て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婚姻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婚姻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 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全て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婚姻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② 報告的な婚姻届出(証書謄本による婚姻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②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出す場合は、出席した届出人(訴訟提起者)の本人確認で欠席した届出人の本人確認をしたとみなします。